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용자 교육의 실시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신설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함
이에, 법 제21조제2호의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법 제11조의2제1항의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명시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에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교육이수 유도를 위해 지연기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제2호 개별기준 중 위반정도(중)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음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를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1. 법 제11조의2 및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교육

별표 제2호다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 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의2호	
1)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 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80
2)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이 6개 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160
3)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이 12개 월을 초과하는 경우		320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u><신 설></u>	② ----- ----- -----.
1. ~ 3. (생략)	1. <u>법 제11조의2 및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교육</u>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u>제2호 및 제3호</u> 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5. ----- ----- <u>제3호 및 제4호</u> ----- -----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u>외국 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u> 에 대한 교육사업	③ ----- ----- ----- ----- ----- ----- -----.
2. ~ 6. (생략)	1. ----- <u>외국 인근로자</u> ----- -----
④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용자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60	120	240
나. 사용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60	120	240
다. 사용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의2호			
1)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2)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3)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라. 사용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00	200	400
마. 사용자가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사용자가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60	120	240
바. 사용자가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80	160	320
사.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80	160	320
아. 사용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60	120	240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00	200	400
차.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타.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법 제32조	100	200	400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항제9호			
파.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00	200	4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7149